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로 외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형사책임 강화〉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982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도로 외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형사책임 강화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의 특례	4
다. 검토의견	8
라.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III. 검토의견

1. 도로 외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형사책임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이른바 “중상해”)를 현행법 제3조제2항 각 호(이른바 “12대 중과실”)에 추가하여 “12대 중과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나 운전자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생략)	제3조(처벌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② ----- ----- ----- ----- ----- ----- ----- -----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략)

<신 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의 특례

-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법 제1조1))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운전자의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정한 경우 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2)의 죄(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단서에 따라 ①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3)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②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⁴⁾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③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른바 “12대 중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른바 “종합보험⁵⁾”)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단서에 따라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4)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5) 책임보험(의무가입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전액 보상하는 보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이른바 “중상해”) 또는 ③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다. 검토의견

-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법 제3조 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는 운전자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12대 중과실”은 모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특정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⁶⁾를 위반하여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⁷⁾”에서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통상 인정되지 않는 곳, 예를 들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부 통행로나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6)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개정안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른바 “중상해”)에는 현행 “12대 중과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또는 운전자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를 억제하려는 취지임.

-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이 없으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에서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도로에서보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현행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12대 중과실”)는 모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특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중상해)만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소위 ‘12대 중과실’>

	위반내용
1호	신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2호	중앙선 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제62조)
3호	제한속도 20km/h 초과(「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제2항)
4호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제2항)
5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
6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7호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96조)
8호	음주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45조)
9호	보도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2항)
10호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
11호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12호	화물적재 안전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라.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①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다른 요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②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체계와 달리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의무 위반 없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③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의 의미가 명확한지 등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도로 외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인명경시 풍조를 줄이자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상 중상해 사고는 발생지역(도로 내·외) 및 보험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하는 데 비해, 개정안은 도로 외 중상해 사고 시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중상해 사고보다 오히려 도로 외 중상해 사고의 처벌이 중해지는 결과를 야기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